

대구역 SD 아이프라임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대구역 SD아이프라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 (<https://www.sd-iprime.com>)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분양홍보관 운영지침이 바뀔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분양홍보관에 문의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음.
- 단,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분양홍보관 관람이 가능함.
- ※ 분양홍보관 방문은 대구역 SD아이프라임 유선전화(053-759-9944)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분양홍보관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함.
-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대구역 SD아이프라임 홈페이지(<http://www.sd-iprime.com>)를 참조하시기 바람.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분양홍보관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함.(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 및 분양홍보관 방문자분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분양홍보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분양홍보관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대구역 SD아이프라임 분양 상담 전화(053-759-994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람.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람.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09.임.(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2021.02.19.)를 받았으며,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 및 신탁사항에 대한 등기와 부기등기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 주택으로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북구)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됨.(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p>*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p> <p>■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 (2020.10.09.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p>	
<p>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음.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p> <p>-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함.</p> <p>-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p> <p>-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p> <p>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p>	
<p>■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에 의거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됨.</p> <p>·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p> <p>·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전혼자녀 등</p> <p>·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p> <p>■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p> <p>■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고)</p> <p>*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p> <p>-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소유로 봄)</p> <p>-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완납일'(실거래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p> <p>■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p> <p>*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함.</p> <p>■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p>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분양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권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d-iprime.com)에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당사에서 통지받은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통지받지 못한 예비입주자의 경우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 이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2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서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는 없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양가측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 알림(주택기금과-13, 2018.1.2.)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거주자로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세대 내부, 실면적 등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청약 유의사항·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음.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일반 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1.04.19.(월)	2021.04.20.(화)	2021.04.21.(수)	2021.04.22.(목)	2021.04.28.(수)	2021.05.03.(월) ~ 2021.05.08.(토)	2021.05.10.(월) ~ 2021.05.12.(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견본주택 방문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샘플하우스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302-197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14331호 (2021.03.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02-197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최고 24층, 아파트 1개동, 총 80세대 [특별공급분 2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135대 [공동주택 107대, 업무시설(오피스텔) 20대, 근린생활시설 8대]
- 입주시기 : 2021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소계
민영 주택	2021000 027	1	72.6587	72	72.6587	21.7493	94.4080	4.1928	51.1382	149.7389	13.8704	20	1	1	0	1	1	4	16	1
		2	84.9772A	84A	84.9772	23.4405	108.4177	4.9037	59.8081	173.1294	16.2220	20	1	1	0	1	1	4	16	1
		3	84.3248B	84B	84.3248	23.8865	108.2113	4.8660	59.3489	172.4263	16.0975	20	1	2	4	1	0	8	12	1
		4	84.5208C	84C	84.5208	23.5158	108.0366	4.8773	59.4869	172.4008	16.1349	20	1	2	4	1	0	8	12	1

	합계	80	4	6	8	4	2	24	56	4
--	----	----	---	---	---	---	---	----	----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M.D.F포함)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등 제외)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 각 세대별, 오피스텔 각 실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평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약식표기)	동(라인)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계약후 60일 이내
72	101동	5~9층	5	154,120,000	231,180,000	385,300,000	38,530,000	77,060,000	269,710,000
		10~19층	10	156,920,000	235,380,000	392,300,000	39,230,000	78,460,000	274,610,000
		20~23층	4	160,120,000	240,180,000	400,300,000	40,030,000	80,060,000	280,210,000
		24층	1	162,120,000	243,180,000	405,300,000	40,530,000	81,060,000	283,710,000
84A	101동	5~9층	5	182,200,000	273,300,000	455,500,000	45,550,000	91,100,000	318,850,000
		10~19층	10	185,400,000	278,100,000	463,500,000	46,350,000	92,700,000	324,450,000
		20~23층	4	190,000,000	285,000,000	475,000,000	47,500,000	95,000,000	332,500,000
		24층	1	192,000,000	288,000,000	480,000,000	48,000,000	96,000,000	336,000,000
84B	101동	5~9층	5	178,200,000	267,300,000	445,500,000	44,550,000	89,100,000	311,850,000
		10~19층	10	181,400,000	272,100,000	453,500,000	45,350,000	90,700,000	317,450,000
		20~23층	4	186,200,000	279,300,000	465,500,000	46,550,000	93,100,000	325,850,000
		24층	1	188,000,000	282,000,000	470,000,000	47,000,000	94,000,000	329,000,000
84C	101동	5~9층	5	178,200,000	267,300,000	445,500,000	44,550,000	89,100,000	311,850,000
		10~19층	10	181,400,000	272,100,000	453,500,000	45,350,000	90,700,000	317,450,000
		20~23층	4	186,200,000	279,300,000	465,500,000	46,550,000	93,100,000	325,850,000
		24층	1	188,000,000	282,000,000	470,000,000	47,000,000	94,000,000	329,00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함.
-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2.6587	84.9772A	84.3248B	84.5208C
약식표기	72	84A	84B	84C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분양금액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대, 중문, 인덕션, 불박이장(침실1, 침실3), 화장대(침실1), 펜트리선반(침실1, 거실)이 포함된 금액임.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72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1	1	1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10%범위)	1	1	2	2	6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0	0	4	4	8
생애최초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7%범위)	1	1	1	1	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3%범위)	1	1	0	0	2
합계	4	4	8	8	2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음.
-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p>자격요건 / 자격제한</p>	<p>※ 특별공급 1회 제한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 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생애최초/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p>무주택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전혼자녀 등</p>																							
<p>청약자격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가.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나.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다.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가.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나.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1순위자 다.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table border="1" data-bbox="309 1114 2092 1262">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	----

자녀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수(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3명이상	15	· 영유아(태어나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인터넷 청약신청자는 가입확인서 제출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공급(8세대)

신청 자격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p> <p>※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p> <p>※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p>
----------	---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최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주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임증관련 제출 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공급(4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청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을 실시한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공급(2세대)

신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산정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처측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됨.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변경(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필요)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치금 총축(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축시 청약신청 가능), 지역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입시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차액 총축(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총축할 경우 청약 가능)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가점제 접수) ①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④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 만30세 미만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내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세대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부양가족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주택소유 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동/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첨제 우선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d-iprime.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 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턴 이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타주택 포함)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IV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2021.04.19(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302-197번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1.04.20(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기타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2021.04.21(수) 08:00~17:30		
	2순위		2021.04.22(목) 08:00~17:30		
<p>※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바람.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함을 양지하시기 바람.</p>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p>※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p>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p>※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p>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p>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p>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바람.</p> <p>※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p> <p>※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V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특별공급	· 일시: 2021.04.28.(수)	· 일시 :2021.05.03.(월) ~ 2021.05.08(토) 10:00 ~ 16:00
일반공급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대구역 SD아이프라이م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302-197번지)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 (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무작위 전산추첨)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를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의 서류제출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당첨된 주택은 해당 공급유형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시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가할 수 없음(단, 일반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 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된 주택은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4.28(수) ~ 2021.05.07.(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4.2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05.03(월) ~ 2021.05.08(토)]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당사에서 통지받은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통지받지 못한 예비입주자의 경우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 이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2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서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는 없음.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유선전화(053-759-9944)를 통해 방문 예약하실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함.(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대구역 SD아이프라임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02-197번지)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대리 제출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함.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표1> 일반공급(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⑥-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입주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 인장	대리인	·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표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⑦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⑧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⑨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다자녀 특별공급	○		①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⑧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 입양의 경우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배우자)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⑧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⑨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④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4>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① 노부모 가점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기타(가점 확인 서류) (<표1> 참고)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 인장	대리인	·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 접수장소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2021.05.10(월) ~ 2021.05.12.(수) (3일간)	대구역 SD아이프라임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302-197번지)
일반공급	10:00 ~ 16:00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기본서류 (특별공급포함)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 절대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통보 를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가족에 한하여 인정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절대 불가)

				- 대리인 : 제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위임장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함.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함.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분양금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부적격 당첨자로 홍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 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한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대구광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의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타 분양 아파트와 본 아파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면밀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SH수협은행	1010-2060-0590	(주)에스디주택건설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801 홍길동]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견본주택 현금 수납불가)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람.(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예비당첨자 추천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 검수일정, 동·호수 추천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천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 예정일 : 2021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점제의 분양가측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측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I	추가 선택품목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대, 중문, 인덕션, 불박이장(침실1, 침실3), 침실1 화장대, 펜트리선반은 무상 제공 옵션임.

■ 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전 세대 무상제공임.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채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을 준수 하여 설치되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었으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았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VIII	유의사항
------	------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써 개별 소유권이전등기 후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시공이 완료된 주택으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승인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피공간 포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의 차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 및 가전제품의 이동 및 설치가 어려운 발코니 구간이 있습니다.
- 2020년 2월 21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세대 내부가구(블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부대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휴게쉼터(4F 지붕), 주민공동시설(북카페, 5F) 설치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북카페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상층부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각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내부여건

-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 세대와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라인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는 도로와 인접하여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철길 및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사업주체 및 대구시청, 북구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입구, 건축물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명칭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아파트)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설치되는 브랜드 로고의 위치에 대하여 개인 취향 등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권

-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식재 등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조명기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떨어진 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홀 계획에 따라 현관, 욕실, 드레스룸, 침실 등 일부 내부공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과 벽체를 공유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배치 특성상 건축물 내 · 외 도로와 건축물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음 및 사생활권침해 등 불편 우려사항

- 배치의 특성상 건축물내외의 도로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과 보행자에 의한 소음, 사생활침해 등으로 거주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경계 일부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 및 방진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일부동에는 소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과 대지주변(도로 및 공원, 타 대지)과의 레벨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조망 및 채광, 생활환경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기준 남측 철도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휴게쉼터(4F 지붕), 주민공동시설(복카페, 5F)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 건축물 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등 공용부분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부지 주변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건축물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무인택배 유지, 주차유도관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2021.02.18.)을 받았으며,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 및 신축사항에 대한 등기와 부기등기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 주택으로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 유의사항
----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변경 될 수 있음)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토목	전기/통신/소방	구조
회사명	(주)에이티건축사사무소	(주)세연엔지니어링	(주)신덕엔지니어링	(주)두루
감리금액(단위 : 원)	₩275,000,000	₩6,600,000	₩29,700,000	₩20,000,000

■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정보

구 분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시공사
상 호	(주)에스디주택건설	(주)문화종합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11-81-34153	503-81-21065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223, 103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5층(신천동)

■ 주택홍보관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02-197번지

■ 분양문의 : 053-759-994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